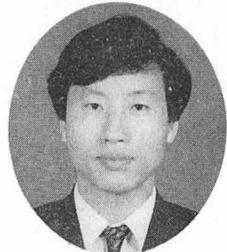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방법(50개 품목)



임진형
(공인회계사 세무사)

UR에 이은 WTO 체제하에서 여러 분야에서의 강도 높은 개방압력이 가해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축산업의 개방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므로 양축농가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1.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 적용법규

조세감면 규제법 제 99조에 의거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기자재 50개 품목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축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효과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한다 함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며 물건값을 10% 인하시켜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양축농가들이 110원짜리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하면 그 물건값 110원에는 원래의 물건값 100원에 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1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물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되어 물건 값은 100원이 된다. 즉 물건값은 세금이 없고 원래의 물건값으로 살 수 있으며 이는 세금이 부과될 때의 가격인 110원보다 10원(약 10%)가 싼 것이다.

따라서 축산기자재 납품업자는 원래의 가격을 그대로 받고 양축농가는 10%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다만 정부의 뜻 10% 만 줄어들게 된다. 즉 정부의 뜻 10%를 포기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표 1〉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 50개 품목

양축구분	품 목
닭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8) 부리절단기 (20) 집란기 (21) 선란기 (22) 세란기 (23) 계란포장기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47) 산란상 (48) 난좌
돼지	(10) 양돈케이지 (11) 거세기 (12) 보정기(틀) (13) 이표기 (14) 꼬리절단기
소	(15) 유방세척기 (18) 목책기 (19) 제각기 (26) 착유기 (27) 예냉기 (28) 우유통 (29) 우유냉각기 (30) 우유저장탱크
사료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교반기 (36) 사료저장탱크 (50) 사료통
공통사항	(3) 자동급이기 (4) 습기급이기 (5) 무단급이기 (6) 자동급수기 (7) 니플 (9) 포유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정화조 (39) 축산분뇨용교반기 (40) 축산용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축산분뇨건조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9) 바닥재(프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배가시키려는 의미가 있다.

다. 적용요건

1) 축산업용 기자재 50개 품목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50개 품목에 한하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2)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농업중 작물 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축산 기자재와 축산업 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되는 축산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3) 1995년 3월 30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축산 기자재 영세율 적용 50개 품목에 대한 규정(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이 1995

년 3월 30일에 공포되어 그날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법과 시행령의 적용일인 1995년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2. 축산 기자재 사업자 세무처리 방법

가. 판매시

사업자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을 판매하게 되면, 일반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0”으로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월별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축산업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받아서 추후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매 기록표의 작성 · 비치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제 4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어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판매기록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6

양축농가는 축산기자재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는 얻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단지 축산
기자재 사업자가 요구하는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기존의 방법대로
매 분기마다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99**다. 부가세 신고**

부가세는 매분기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
부하여야 하는데, 남은 금액이 (-)가 되면 반대
로 환급신청을 하게 된다. 축산기자재 사업이 전
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는 매출
세액이 “0”이 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매입세액
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을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조기 환급 청에서 설명한다.

라. 영세율의 조기환급신청

1) 영세율 조기 환급은 매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익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후 15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다.

2) 조기환급 신고방법

구 분	신고대상기간		신고기한	환급기한
영 세 율 조기환급	매 월	매 월	신고기한 기한 후 25일 이내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매 2월	1~2월 3월 4~5월 6월 7~8월 9월 10~11월 12월		
일 반 조기환급	신고 기간	1~3월 4~6월 7~9월 10~12월		신고기한 후 30일이내
	일반환급 및 일반신고	3월 4~6월 7~9월 10~12월		

3) 신고시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매출, 매입)
- 영세율 첨부서류 : 월별 판매액 합계표 또는 납품 확인서, 외화입금 증명서(수출시) 등
-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필요시)

마.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사업자가 법인이면 결산기말로부터 75일이내
(외부 세무조정시는 90일이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익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 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
다.

3. 양축농가 세무 처리 방법**가. 부가세 등 세무사항**

양축농가는 축산기자재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
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는 얻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단지 축산 기자
재 사업자가 요구하는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확
인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기존의 방법대로 매 분기마다 익월 25일까지 신
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관해서도 변동사항은
없으나 한가지 세법상 혜택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
생한 연도부터 1994. 1. 1.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
는 6년간, 이후에 개시한 사업자는 4년간 소득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준다.